

원사기준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추정*

- 한-캐나다 FTA를 중심으로 -

Economic Effects of Yarn-forward Rule on Textile Trade

- Focusing the Canada-Korea FTA -

조 정 란(Jung-ran Cho)**

정 인 교(In-kyo Cheong)***

Abstract

FTAs need to introduce rules of origin (ROO) in order to curb trade deflection. ROO should be designed to be neutral and modest forms, but many countries tend to adopt complicated forms of ROO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ve trade policy. Typically, Canada and US prefer yarn-forward rule as the ROO on textile and apparel, which is the most complicated ROO in FTAs.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effects of yarn-forward rule on the trade of textile and apparel in the Canada-Korea FTA. Although several papers on ROO in FTAs were published, empirical studies on sectoral effects of ROO in FTAs are quite limited. Maybe this paper can be the first study in Korea on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ROO on individual industr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persuade Canada to adopt less stringent type of ROO in the bilateral FTA between two countries.

Key Words : Rules of Origin (ROO), Yarn-forward Rule, Canada-Korea FTA, CG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주요 FTA의 섬유류 원산지기준 |
| II. 한-캐나다 FTA 협상 | V.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
| III.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현황 | VI. 결론 및 시사점 |
| | 참고문헌 |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FTA연구센터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서론

FTA 협정에서 원산지기준은 제3국의 상품이 우회수입 되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보거나 또는 무관세 FTA 협정 역내로 반입되는 것, 즉 FTA 특혜를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산지기준의 목적 외에, 대부분의 FTA 협정들이 주로 섬유와 의류, 농산물, 자동차 등과 같은 민감한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원산지기준이 활용되기도 한다.

특정 FTA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기준은 그 자체가 해당 산업의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만, 기존 다른 FTA에서의 기준과 차이가 나 관련 업계의 생산 및 영업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스파게티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 원산지기준과 유사한 형태의 원산지기준을 설정하였다. 만약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도입되면 FTA 경제효과가 축소될 것이다.

2005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섬유, 자동차 등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와의 FTA에서 가장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캐나다는 섬유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의 원산지기준을 제외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캐나다와의 FTA에서 엄격한 원사기준 원산지기준 설정이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 제2장은 한-칠레 FTA 협상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이어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에서 섬유산업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 고용 및 수출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제4장에서는 섬유류에 대한 FTA 원산지기준을 고찰하고 있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싱가포르, EU-멕시코, 칠레-EU, 일본-싱가포르, 한국-칠레 등의 FTA 섬유분야 원산지기준을 분석한다. 이어 제5장은 캐나다와의 FTA에서 원사기준 원산지기준이 채택될 경우의 경제효과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TA 체결시 특정 산업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추정 연구가 외국에서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사실상 첫 작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의 FTA 원산지기준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캐나다 FTA 협상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가 2003년 9월 확정된 FTA로드맵에는 캐나다와의 FTA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4년 5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캐나다는 선진화된 경제·통상제도를 구비하고 있고, 발달된 서비스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종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적인 산업 및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교역은 경쟁하는 품목도 있으나, 대체로 상호보완적이어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¹⁾

양국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비재 및 기계장비류 등 제조업을, 캐나다는 에너지, 광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래 우리나라는 대캐나다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교역량은 상호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 중 자동차가 36%, 휴대폰이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캐나다 수입품은 석탄(17%) 및 제지원료(13%)가 전체의 30%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철금속 및 축산 관련품목 등의 수입비중이 높다.

<표 1> 한-캐나다 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02	'03	'04	'05	'06
총교역액	4,187	4,542	5,572	6,049	6,711
수 출 (증가율)	2,341 (15.0)	2,682 (14.6)	3,383 (26.1)	3,446 (1.9)	3,620 (5.1)
수 입 (증가율)	1,846 (1.3)	1,860 (0.8)	2,189 (17.7)	2,603 (19.0)	3,091 (18.7)
무역수지	495	822	1,194	842	529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7월 협상이 시작되었고, 2년 반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국간 FTA 협상에 대한 최초의 공식논의는 200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

1) 무역투자진흥공사가 2004년도에 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기업의 84.6%가 한-캐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FTA 예비협약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과 3월말에 양국의 실무자들이 FTA 정책 및 협정문 각 Chapter별 구성요소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한-캐나다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표 2>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기간(일시)	내용
예비협약	2005.1.25 - 2005.4.1	한-캐 FTA 예비협약(2차례)
공청회	2005.5.6.	한-캐 FTA 공청회 개최 (서울)
통상장관 회의	2005.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개최 (중국 대련)
공식협상	2005.7.28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 (서울)
	2007.11.26-29	한-캐나다 FTA 제12차 협상 (서울)

2005년 우리 정부는 한-캐나다 FTA 공청회(5월 6일)와 FTA 민간자문회의(5월 10일)를 개최하였다. 이어 5월 21일에는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에 대해 심의하였고, 이를 뒤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을 공식 승인하였다. 2005년 7월 28일 한-캐나다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되어 협상 추진일정, 협상분과 등 향후 협상 추진체계/framework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협상(2005.11.28-12.2)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 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분야 양허방식(modality)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6년 6월말 제6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안을 교환하였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 및 분과별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통합협정문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6년 9월말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7차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원산지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양허안, 분야별 통합협정문, 품목별 원산지 협상,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고, 2007년 4월말 제10차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적권, 원산지,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경쟁, 총칙 등 협정문 본문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캐나다측이 한미 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캐나다에게 적용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 등 일부 분야는 우리나라가 수용하기 어렵고, FTA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장점(예: 내수시장 규모)을 높이 평가하여 미국에게 제공한 내용을 캐나다에게 그대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FTA 정책을 계승하며,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2008년 하반기에 양국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중 비준을 거쳐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현황

1. 산업개요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인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으며, 생산, 수출, 고용, 업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2005년 현재,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업체수의 14.7%, 고용의 9.6%, 생산 4.4%, 수출 4.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과거에 비해 수출비중이 떨어졌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외화가득산업이자 수출산업이며, 200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해 왔다.

<표 3> 섬유산업 일반 현황(2005년)

구 분 (단위)	업체수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06)
	(개사)	(천명)	(10억원)	(10억원)	(억달러)
제조업	117,205	2,866	851,789	312,792	3,255
섬 유 (비중)	17,252 (14.7)	274 (9.6)	37,897 (4.4)	16,032 (5.1)	132 (4.1)

자료 : 통계청(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섬유산업 중에서 국내 패션의류산업은 섬유제조 19,000개, 패션 Shop 및 패션물 등이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2.7%)이나,²⁾ 편직물 수출에서는 세계 3위(13.3%), 화섬직물 세계 5위(5.4%), 화섬생산 세계 6위)의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40년간 수출신장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생산기반 약화

2) 섬유수출국 순위는 중국, 이태리, 독일, 미국, 한국 순임

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4년 4.9%를 차지하였다.³⁾

<표 4> 우리나라 섬유산업 생산 현황

(단위: 10억 원, %)

구 분	'00년(A)	'01년	'02년	'03년	'04년(B)	연평균	
						(B/A)	
제조업	564,834	583,793	634,199	677,371	794,853	8.9	
섬유 (비중)	39813 (7.0)	40845 (7.0)	42570 (6.7)	40898 (6.0)	39197 (4.9)	△0.4	
섬유	섬유소재	26,033	25,138	24,931	22,926	23,004	△3.0
	의류	9,146	10,752	13,070	12,064	11,917	6.8
	화학섬유	4,634	4,956	5,570	5,907	4,276	△2.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05.12)

2. 섬유산업 교역 및 투자 현황

섬유류 수출은 1955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1971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41.6%를 차지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6.0%로 낮아졌다. 그 결과 세계 시장점유율은 1988년 8.3%에서 1995년 5.4%로, 2002년 3.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5> 섬유류 수출 추이

섬유수출	'90(A)	'95	'00(B)	'05(C)	연평균 증감율	
					B/A	C/B
금액 (백만불)	14,766	18,656	18,783	13,946	△0.4	△5.8
물량 (천 톤)	2,863	2,399	3,593	2,810	△0.1	△4.8
단가(\$/kg)	5.16	7.78	5.23	4.96	△0.3	△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ITA)

수출 구조면에서는 직물류의 수출비중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의류 수출비중은 1995년 25.3%에서 2004년 20.3%로 소폭 낮아진 반면, 직물 수출비중은 1995년 54.6%, 2000년 54.6%, 2004년 55.0%선을 유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5년 10.0%에서 2004년

3) 우리나라의 세계 화학섬유 생산비중은 '99년(9.7%)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7.6%로 세계 제4위를 차지하고 있음.

18.2%로, 대미국 수출비중은 1995년 14.7%에서 2004년 18.7%로 높아졌다.

섬유류 수입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까지는 원자재의 수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의류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2000년대 이후 연평균 증가율 20.9%). 중국으로부터의 중저가 제품 수입이 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들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섬유산업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의류 수출 감소에 반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수출 139억 달러, 수입 6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6> 우리나라 섬의류 수입추이

(단위: 백만\$, %)

구 분	'95년	'00년(A)	'02년	'05년	연평균(B/A)
전 체	5,214	4,788	5,688	6,765	7.2
의 류	1,014	1,241	2,177	2,812	17.8
비 중	19.5	25.9	38.3	41.6	-

섬유산업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난, 높은 임금 상승률 등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에 힘입어 대중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섬유류 해외투자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순(금액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봉제산업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화섬대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표 7> 섬유산업 해외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

구 분	'95년		'00년		'05년		전체(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953	2,041	1,068	1,504	2,090	3,287	16,761	31,464
섬 유	190	244	203	119	391	337	3,336	3,401
대중국	133	127	127	28	276	191	2,123	1,361
비 중	70	52	62.6	23.5	70.61	56.7	63.6	40

주 : 비중은 전체 섬유류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섬유류 교역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2004년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제13위 수출시장인데 비해, 섬유류에 있어서는 21위 수출국이다. 대캐나다 섬유류 수출은 2억 달러, 수입을 3천6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섬유류 수출과 수입의 1.34%와 0.56%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섬유류의 약 절반은 직물과 섬유제품이며, 섬유제품의 대부분은 의류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캐나다산 섬유제품은 소규모 수입되고 있으며, 의류수입액은 2004년 3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캐나다 섬유교역에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직물과 의류가 수출되고 있다.

<표 8>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캐나다 교역 현황(2004)

(단위: 백만\$, %)

	섬유류		섬유제품		의류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세계(A)	15,192	6,359	4,343	3,322	3,085	2,652
대캐나다(B)	200	36	105	13	86	3
비중(A/B)	1.34	0.56	2.42	0.40	2.78	0.10

주 : 섬유제품은 의류외에 기타제품(모자, 손수건, 어망, 양탄자 등)을 포함
자료 : KOTIS

IV. 주요 FTA의 섬유류 원산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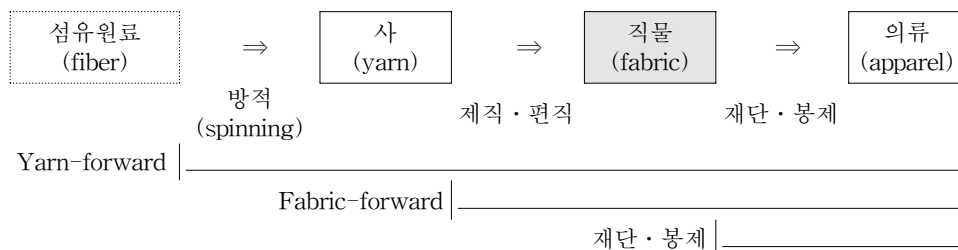
섬유산업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주요 이슈는 방사, 방출, 제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원산지를 직물의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물 생산국으로 할 것인지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EU, 호주 등의 국가는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에게 원산지를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의 국가는 직물생산국이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에서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 원산지기준 설정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완화된 형태의 규정을 희망하고 있다. 의류에 대해서는 NAFTA에 명시되었던 yarn-forward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엄격한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Yarn-forward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목화, 누에고치 등 섬유원료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회원국 역내(혹은 개별 회원국)에서 생산된 사류(yarns)를 사용하여야 하며,⁴⁾ (2) 국산 사류를 이

4) 섬유사의 원료가 되는 목화, 누에고치 등은 수입산을 사용해도 무방함. 즉, 수입한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이 실로 견직물을 만들게 되면 섬유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용하여 역내에서 직물을 짜야 하며, (3) 재단 및 봉제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와 (3)의 공정, 즉 제직·편직 및 재단·봉제 공정이 이루어지면 fabric-forward 기준으로 불린다.

<그림 1> 섬의류 원산지기준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의류에 비해 완화된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 NAFTA와 한-칠레 FTA 원산지기준에서는 fabric-forward 원칙하에 관세세번변경(Heading 변경), 즉 제직 및 편직공정의 수행국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로 섬유류 수입국가는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한 반면, 수출국가는 덜 엄격한 규정을 FTA 협정에 도입하고 있다. NAFTA에서는 원사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3번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섬유사산지주의(yarn-forward rule)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북미지역이 공급부족을 겪는 직물인 편직내의류, 브래지어, 셔츠는 섬유사 산지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미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원료산 직물에는 섬유원료산지주의(fiber-forward rule)를 적용한다.

EU의 경우, 인조스테이플 섬유(HS5501~5507)는 화학원료로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수가공공정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자수포(HS5810)는 방사로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수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발효된 EU-이집트 FTA에서는 털실(yarn), 직물(fabric)의 면혼용 범위가 50%에서 89%로 상향조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역내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갈수록 섬유산업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⁵⁾ 하지만 HS50~63류 이외의 의류 부속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섬유제품의 제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⁶⁾

5) 예를 들어, 이집트산 면섬유 75%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 25%로 생산한 yarn은 이집트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게 됨.

6) 예를 들어, yarn으로 생산되는 바지 생산에 섬유가 부분적으로 사용된 지퍼 등을 사용해도 원산지에는

<표 9> 섬유류 원산지기준

구 분	내 용
미국-싱가포르 FTA	-제5001호~제5003호(누에고치, 생사, 견웨이스트)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원산지로 인정함 -제5004호(견사)는 제5005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5호(견방사)는 제5004호~제5006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제5006호(견사·견방사)는 제5004호~제5005호를 제외한 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제5201호~제5207호의 면, 면웨이스트, 면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면 재봉사와 면사는 제5401호~제5405호, 제5501호~제5507호를 제외한 류에서 세번이 변경된 경우
멕시코-EU FTA	-제50류~제53류의 실크, 모·섬유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은 세번 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견웨이스트의 소면, 소모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52류(면의)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에 의함
칠레-EU FTA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에 의해, 제5003호의 경우 소면 또는 견웨이스트의 소모가 행해진 국가 -제5004~제5006호의 견사, 견방사는 소면, 소모 등 면화 및 양털 잭기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
일본-싱가포르 FTA	-제50류(견)는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함 -제5005호(견방사)는 제28류에서 제32류까지의 화학생산품과 제4701호, 제4706호, 제5001호, 자연산/인조 섬유조직, 견웨이스트로부터 세번이 변경된 경우
한국-칠레 FTA	-제50류(견)는 매우 세분화된 원산지기준을 규정함 -제51류(모), 제52류(면),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는 세번 변경기준에 의해,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 제63류(방직용 섬유 제품 및 냅마)는 우리나라 또는 칠레에서 절단, 재봉, 조립된 것에 한하여 세번이 변경된 경우
캐나다-칠레 FTA	-직물(제50-6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사용함 -의류봉제(제61-62류): 복합기준사용(4/6단위 세번변경 및 재단봉제조건)
캐나다-이스라엘 FTA	-직물(제50-6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사용함 -의류봉제(제61-6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사용함

자료 : 정인교 외(2005)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에서는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하지만 손수건, 숄, 스카프, 침대커버, 베개 커버 등은 염색, 프린팅, 자수 외에도 단순조합, 라벨링, 프레싱, 드라이클리닝, 마감공정까지 회원국에서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멕시코·EU 및 칠레·EU FTA에서는 소면(梳綿), 소모(梳毛) 등 면화나 양털 잣기(carding) 전의 공정이 행해진 곳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면과 소모는 실을 잣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9〉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섬유산업 원산지기준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재단, 봉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De Minimis 규정을 적용할 경우 HS50~63의 섬유류는 가격(8%) 대신 중량기준(8%)을 적용한다. 미-싱가포르 FTA의 미소조항(De Minimis) 규정에 따르면, 섬유류는 역외산 재료가 중량비중 7%를 초과하지 않으면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섬유류 외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기준 10%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칠레 FTA는 직물(제50-60류)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류봉제(제61-62류)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재단, 봉제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칠레 FTA와는 달리,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캐나다는 직물에 대해 강화된 원산지기준(2단위 세번변경기준: CTC)을 사용한 반면, 의류봉제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였다.

V.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1. 기존 연구결과

FTA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문 편이다. 국내에서 발간된 원산지기준에 대한 연구는 원산지기준 형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⁷⁾ 원산지기준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FTA 역사가 긴 외국의 경우, 원산지기준의 거시경제적 효과만이 주로 연구되고 개별 산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기준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미시적 자료와 더불어 원산지기준의 기술적 측면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⁸⁾

7)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정인교, 조정란, 방호경, 김석오(2005)를 들 수 있음.

8) 2007년 9월 WTO 세미나("Multilateralizing Regional Trading Agreements")에 참석한 원산지기준 전문가들

원산지기준 경제효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Koskinen(1983), Holmes & Shephard(1983), USITC(1985), Krueger(1993), Lopez-de-Silanes 외(1994) 등을 들 수 있다. Koskinen(1983)은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수출 거래액의 1.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Holmes & Shephard(1983)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는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함을 보여주었다. Krueger(1993)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FTA 원산지기준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논문은 USITC(1985), Stankovsky(1990), Lopez-de-Silanes 외(1994)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USITC(1985)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업체당 3만~1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tankovsky(1990)의 연구는 오스트리아가 EC에 가입하기 전 EC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원산지기준으로 인한 비용이 수출가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산지기준 영향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 분석

Yarn-forward 기준과 같은 특정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투입-산출(Input-Output: IO)의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하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산업의 투입산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투입산출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섬유원료, 사류, 직물, 의류로 이어지는 투입산출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사류와 직물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섬유류 원산지기준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낮은 편이다.

또한 현재 이용 가능한 투입산출표의 기준연도가 2000년이어서 통계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목적에 필요한 통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섬유산업연합회(섬산연)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실측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한국섬유산업의 물동분석)를 2003년까지 축적해 왔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섬산연 자료가 본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본 통계데이

은 이러한 원산지기준 경제효과 분석의 어려움을 논의한 바 있음.

터로 이용하였다.

Yarn-forward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단계는 사류의 생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표 10>은 사류의 국내 공급 및 배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사류 생산은 349,459M/T이고, 381,471M/T의 외국산 사류를 수입하여, 총 공급량은 730,930M/T이었다. 이들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방적사의 국산계수는 47.81%(=349,459/730,930)가 된다.

<표 10> 방적사의 공급과 배분

(단위: M/T)

섬유원료	공급(국내생산 및 수입)	배분
천연 320,845	생산 349,459	직물공업 419,863
화섬 92,855	수입 381,471	니트공업 240,270
	합계 730,930	수출 58,732
		기타 12,065
		합계 730,930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의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사류는 주로 직물공업과 니트공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수출된다.⁹⁾ 국내에서 생산된 사류 중 얼마가 직물과 니트공업에 투입되는가에 대해서는 섬산연 통계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방적사 국산계수를 적용하여 이들 산업에 투입된 국산 사류의 양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고조정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직물생산에는 종류에 따라 화섬, 폴리면혼방(T/C), 방적사가 사용되며, 직물의 제직 및 편직에 사용된 사류는 총 1,658,225M/T으로 계산된다. 이 중 수입 사류는 218,922M/T이므로 국산 사류는 총 투입 사류에서 수입사류를 뺀 1,439,303M/T가 된다. 투입된 총 사류 중 국산사류의 비중은 86.80% (=1,439,303/1,658,225)가 된다.

한편, 국내에 공급된 직물은 총 1,999,989M/T로 계산되었고, 이 중 국내 생산 직물은 1,658,224M/T가 된다. 수입직물이 재수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수입직물의 대부분은 국내 의류 산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국내 생산 직물의 대부분은 수출되고, 나머지가 국내 의류산업에 투입될 것이다. 따라서 의류의 국산 직물 투입계수는 40.75%(=235,065/576,830)로 계산된다.

9) 본 연구에서는 섬유류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물, 의류와 니트류를 중심으로 분석함. 모자, 로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에 준해 해석하기로 함.

<표 11> 의류산업의 투입산출 구조

(단위: M/T)

사류	직물(국내생산 및 수입)	직물의 배분
화섬(국산) 1,134,986	공급 - 생산 1,658,224 - 수입 341,765 합계 1,999,989	수출 1,423,159
T/C(국산) 102,501		의류산업 576,830
천연(국산) 1,266		- 수입직물 341,765
방적사 419,471		- 국산직물 235,065
- 국산 200,550		
- 수입 219,313		
합계 1,658,225		

주 : 화섬, T/C는 국산이 대부분이며,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의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의류에 비해 니트류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용이한 편이다. 합섬 혹은 방적사와 같은 사류를 이용하여 편직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2003년 우리 니트업체는 총 361,894M/T의 사류를 사용하여 365,427M/T의 니트류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니트류는 수출과 내수로 충당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니트류만 수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수입 니트류는 내수로만 충당되지 재수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수출 니트류 생산에 사용된 사류의 일부(125,397M/T)는 수입원료이다. 니트류에 사용된 국산 사류의 비중은 65.35%로 계산되며, 평균적인 투입산출 구조를 가정하면 총 수출 니트류의 65.35%만이 yarn-forward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니트산업의 투입산출 구조

(단위: M/T)

사류	니트 공급(국내생산 및 수입)	국내 생산 니트 배분
화섬(국산) 121,072	공급 456,427 - 생산 365,721 - 수입 90,706 합계 1,999,989	생산 365,721
천연(국산) 552		- 수출 127,041
방적사 240,270		- 내수 238,680
- 국산 114,873		
- 수입 125,397		
합계 361,894		

주 : 화섬, T/C는 국산이 대부분이며,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의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하는 섬의류 최종제품(의류와 니트류 중심 분석)중 yarn-forward 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중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13> 섬의류 최종제품의 yarn-forward 충족 비율

	의류	니트류
비중	35.37%	65.35%
근거	국산사류 비중(86.80%) * 의류의 국산 직물 투입계수(40.75%)	니트류에 투입된 국산사류 비중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의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Fabric-forward 기준이 직물 및 의류의 원산지기준 설정에 사용될 경우, fabric-forward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생산 직물의 비중은 86.80%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니트류는 제직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fabric-forward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yarn-forward 기준과 차이가 없게 된다.

3. 원사기준의 한-캐 섬의류 교역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섬의류 최종제품 수출의 대부분은 의류(81.7%)와 니트류(18.3%)이고, 이들 품목의 대캐나다 수출액 중 각각 35.37%, 65.35%가 yarn-forward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표 13〉 참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섬의류 최종제품 중 엄격한 yarn-forward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중을 계산하여 보면, 〈표 14〉와 같다. 즉, 평균 40.86%만이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관세상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14> 대캐나다 수출 의류의 원산지기준 충족 비율(가중평균)

	단위	의류	니트류	합계
대캐 수출액	천\$	85,836	19,251	105,087
비율(A)	%	81.7	18.3	100
원산지충족비율(B)	%	35.37	65.35	-
가중평균(=A/B*100)	%	28.89	11.97	40.86

자료 : 섬유산업연합회의 물동량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계산

한편, 캐나다의 경우, 사류 및 직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구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섬의류 분석과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다만 양국간 비교를 위해 GTAP 통계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¹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GTAP 통계자료 역시 사류의 투입물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인건비(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기준이므로

10) GTAP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퍼듀대학에서 제공하는 세계경제통계자료이며, 일반균형모형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 및 업데이트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GTAP 홈페이지(www.gtap.agecon.purdue.edu) 참조.

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위해 통계자료의 조합을 통해 아래 <표 15>와 같은 투입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물 및 의류의 국산섬유 사용비율은 각각 59.13%, 78.22%로 나타났고, 캐나다의 경우, 각각 52.77%, 50.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GTAP 통계로 본 국산 중간재 및 부가가치 투입비율(%)

	한국	캐나다
직 물	59.13	52.77
의 류	78.22	50.07

자료 : GTAP(제6판)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우리나라의 직물 및 의류의 국산비율(물량 기준)은 각각 86.80%와 40.86%로 나타나 GTAP의 통계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GTAP 통계가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기준이라는 점과 기준시점(GTAP은 2001년)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량 기준 국산비율이 40.86%인데 비해, 부가가치를 포함한 국산비율은 78.22%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직물과 의류의 국산비율은 각각 52.77%와 50.07%로 우리나라보다는 낮다.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가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제안할 이유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캐나다의 직물 및 의류에 대한 통계부족으로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GTAP의 국산비율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비율로 인정하기로 한다.

섬의류 관세인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균형모형(CGE)과 같은 통상적인 무역모형으로 추정될 수 있다.¹¹⁾ 그러나 관세인하 외에 원산지기준 요건을 영향 분석에 추가해야만 하므로 기존 CGE 모형을 변형시켜야 한다. 즉, CGE 모형에다가 yarn-forward 기준을 추가하여야 한다. Yarn-forward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이므로 이를 모형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yarn-forward 기준을 충족시키는 원자재(가공단계) 비중만큼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표 16>과 <표 17>은 한-캐나다 FTA에서 yarn-forward 적용이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원산지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섬의류 수출은 5억3천9백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면 수출증가액은 2억5천9백만달러로 낮아져

11) CGE 모형의 구조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정인교(2006) 참조.

yarn-forward 원산지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이 2억8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원산지기준의 비용을 직물과 의류로 나누어 보면, 직물보다는 의류에 대한 비용이 2억4천5백만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원산지충족 비율과 더불어 대캐나다 수출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Yarn-forward 적용시 한국의 대캐나다 섬의류 수출증가액

(단위: 백만\$)

	ROO 고려하지 않을 경우(A)	ROO 고려할 경우(B)	ROO 비용(=A-B)
직물	202	167	35
의류	337	92	245
합계	539	259	280

섬의류산업 기반이 약하고,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캐나다가 우리나라와의 FTA로 섬의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산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섬의류 수출을 천8백만달러 증가시킬 전망이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면 수출증가액은 8백만달러로 축소되어 yarn-forward 원산지기준의 비용은 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Yarn-forward 적용시 한국의 대캐나다 섬의류 수입증가액

(단위: 백만\$)

	ROO 고려하지 않을 경우(A)	ROO 고려할 경우(B)	ROO 비용(=A-B)
직물	14	6	8
의류	4	2	2
합계	18	8	10

만약 한-캐나다 FTA에서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기준이 도입되면, 원산지기준의 비용은 1억6백만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Fabric-forward 원산지기준하에서의 대캐나다 수출증가액이 4억3천3백만달러로, yarn-forward 원산지기준하의 2억5천9백만달러보다 수출증가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Fabric-forward 규정하에서는 의류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므로 <표 18>에서 보듯이 의류의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표 18> Fabric-forward 적용시 한국의 대캐나다 섬의류 수출증가액

(단위: 백만\$)

	ROO 고려하지 않을 경우(A)	ROO 고려할 경우(B)	ROO 비용(=A-B)
직물	202	166	36
의류	337	267	70
합계	539	433	106

GTAP 자료에서는 사류와 직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fabric-forward 규정 적용시 예상되는 캐나다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 영향을 평가할 수 없다. 현재의 산업 및 교역구조로 볼 때,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캐나다의 섬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¹²⁾

VI. 결론 및 시사점

FTA에서 원산지기준은 우회수입 방지라는 고유의 목적외에 비회원국을 차별화하고 수입억제를 위해 까다로운 형태의 기준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까다로운(엄격한) 원산지기준은 시장개방에 대한 취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흔히 사용되는데, 이를 원산지기준의 “정치경제적 효과”라고 부른다. 어떤 형태의 원산지기준이 도입되는가에 따라 캐나다와의 FTA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이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Yarn-forward 기준과 fabric-forward 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의 차이인 1억7천4백만달러가 엄격한 원산지기준의 비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Yarn-forward 기준의 비용이 1억7천4백만달러로 추정되었다고 해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yarn-forward 기준으로도 우리 섬의류 업계는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덜 까다로운 기준이 채택되면 경제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채택되는 엄격한 기준은 FTA 정신과 배치됨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자 한다.

NAFTA에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였고, 특히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규정인 yarn-forward 기준을 설정하였다. 2005년 하반기 우리측에 전달된 캐나다의 원산지기준도 기존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

12) 캐나다는 섬의류 순수입국이며, 산업기반도 취약한 상황임.

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 논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즉, 섬의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수조건인 국산 섬유사 혹은 부가 가치 비중 면에서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할 경우, 비용은 캐나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 측에 원산지기준의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섬의류 산업규모와 수출실적이 작지만, 캐나다는 국내 섬유산업의 정치적 민감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 엄격한 원산지기준인 yarn-forward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측은 협상에서 경제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양국간 교역을 적정수준보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캐나다측에게 강조하고, 양보를 유도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작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섬의류 전체의 투입산출구조를 중심으로 캐나다와의 FTA에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제품의 투입산출구조를 분석해야만 보다 정확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캐나다측 기초통계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산업전체의 평균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방호경(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송송이(2005).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무역 연구소.
- 정인교(2006). 한중 FTA의 경제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12(1). 111-138.
- 정인교, 조정란, 방호경, 김석오(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1994). NAFTA 원산지기준해설.
- 송현민(2005). WTO 통일원산지 협상 동향과 전망. 관세와 무역. 5월호.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2005). 한-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 수출에의 영향.
- Cadot, Oliver, Jaime de Melo, Antoni Estevadeordal(2002). Akiko Suwa - 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2003). Measuring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Proposals for Multilateral Harmonization.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and Regional Programs Depart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Holmes, P. and G. Sheppard(1983). Protectionism in the Economic Community. *International Economics Study Group*. 8th. Annual Conference.
- Koskinen, Matti(1983). Excess Documentation Costs as a Non-Tariff Measur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Documentation Costs. *Working Paper*.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Krueger, Anne O(1993).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4352. Cambridge, MD: NBER.
- Lopez-de-Silanes, Florencio, James R. Markusen, and Thomas F. Rutherford(1994). The Auto Industry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n Joseph F. Francois and Clinton R. Shiells(eds.). *Modeling Trade Policy*. Cambridge, M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oductivity Commission(2004). Rules of Origin under the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Restrictiveness Index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anberra.

Stankovsky, Jan(1990). *Bedeutung der Ursprungsregelung im Außenhandel*, Studies des Osterreichischen Institute für Wirtschaftsforschung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inanzen, Wien.

USITC. 1985. *The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U.S. Imports and Exports*. USITC Public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2002).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FTA 협정문>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PANEURO(EU의 원산지기준)
- EU-Mexico FTA,
- EU-Chile FTA
- Korea-Chile FTA
- Canada-Chile FTA
- Japan-Singapore EPA
- US-Singapore FTA